

돼지막창의 수입산 원재료 사용 및 위생증명서 표기 자문 결과

조사회신일 : 2016.8.10

품목 : 돼지막창

I. 상품개요

- 상품명
- 돼지막창
- 상품 형태
- 가열처리된 돼지막창

II. 자문내용 및 결과

1. 자문내용

- 1) 돼지막창의 수입산 원재료 사용에 대한 일본 수출 가능여부
- 2) 막창원육을 사용한 생산품을 한국 정부 발행 위생증명서 양식상의 NO4항의 소세지, 햄으로 체크하여 수출이 가능한지

2. 자문 회신

- 1) 돼지막창의 수입산 원재료 사용에 대한 일본 수출 가능여부에 대하여, 일본 농림수산성의 법률조항에는 따로 언급이 되어있지는 않으나, 타국산 원재료 수입 시 이미 한국 정부의 식품위생법상 등에 의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되어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
다만 주의사항으로 [도살 전, 후의 검사결과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음으로 판정된 동물의 소화관, 자궁 등을 1시간 이상 끓는물에 끓였다]는 사항을 정부발행 위생증명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2) 막창원육을 사용한 생산품을 한국 정부 발행 위생증명서 양식상의 NO4항의 소세지, 햄으로 체크하여 수출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가공물의 형태 등을 고려하였을때 동형의 제품(소세지 등)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